

제138회 규정관리위원회 결과

<목 차>	의결결과
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	보 류
임원의 인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	보 류
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수정의결
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수정의결
인사규정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	수정의결
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내규 일부개정내규안	원안의결

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

□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수정의결

○ 의안번호 제3호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65조(징계의 효력)</p> <p>2.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<u>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감한다.</u></p>	<p>제65조(징계의 효력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출근</u> <u>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그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규정은 종전 대구시설공단, 사업운영본부, 도로교통본부 및 청렴감사실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.</u></p>	<p>제65조(징계의 효력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출근</u> <u>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그 기간 동안의 보수는 보수규정을 따른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<u>제2조(정직에 관한 적용례) 제6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</u></p>

□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수정의결

○ 의안번호 제4호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0조(징계처분기간 등의 보수)</p> <p>① 징계처분기간 중의 <u>보수의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</u></p> <p>1. <u>정직은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한다.</u></p>	<p>제10조(징계처분기간 등의 보수)</p> <p>① ----- <u>보수의 감액은</u> ----- -----</p> <p><삭 제></p> <p>부 칙</p> <p><u>제2조(일반적 적용례) 이 규정은 종전 대구시설공단, 사업운영본부, 도로교통본부 및 청렴감사실 업무에 대해 적용한다.</u></p>	<p>제10조(징계처분기간 등의 보수)</p> <p>① ----- <u>보수는</u> ----- -----.</p> <p>1. <u>정직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부 칙</p> <p><u>제2조(정직 기간 중 보수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 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</u></p>

□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내규 일부개정내규안 원안의결

○ 의안번호 제6호

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내규 일부개정내규안

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성희롱·성폭력”을 “성희롱·성폭력·스토킹범죄”로 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“스토킹범죄”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성희롱·성폭력”을 “성희롱·성폭력·스토킹범죄”로 한다.

별지 1 및 별지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개정이유
<p>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대구시설공단(이하“공단”이라 한다)의 <u>성희롱·성폭력</u> 예방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성희롱·성폭력·스토킹범죄</u>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“스토킹범죄”란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 2호에 규정된 행위를 말한다.</u></p>	<p>행정안전부 「지방공기업 인사·조직 운영 기준(’22.11.24.)」 개정 사항 반영</p>
<p>제3조(공단의 책무) ① 공단은 <u>성희롱·성폭력</u>(이하 “성희롱 등”이라 한다)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,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공단의 책무) ① ----- ----- <u>성희롱·성폭력·스토킹범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

성희롱·성폭력 고충 상담신청서					
접수일			담당자	(서명)	
당사자	신청인	성명		소속	
		직급		성별	
	대리인 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	성명		소속	
		직급		성별	
	행위자	성명		소속	
		직급		성별	
상담(신청) 내용	※ 육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, 지속성의 여부,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				
요구사항 (조사를 원하는 경우)	1. 성희롱·성폭력의 중지() 2. 공개사과() 3. 징계 등 인사조치 () 4. 기타 ()				
처리결과					
증빙자료					

성희롱·성폭력·<u>스토킹범죄</u> 고충 상담신청서					
접수일			담당자	(서명)	
당사자	신청인	성명		소속	
		직급		성별	
	대리인 (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)	성명		소속	
		직급		성별	
	행위자	성명		소속	
		직급		성별	
상담(신청) 내용	※ 육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, 지속성의 여부,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				
요구사항 (조사를 원하는 경우)	1. 성희롱·성폭력· <u>스토킹범죄</u> 의 중지() 2. 공개사과() 3. 징계 등 인사조치 () 4. 기타 ()				
처리결과					
증빙자료					

[별지 2] (현 행)

성희롱·성폭력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									
접수 번호	접수 일자	신청인			고충내용	처리결과	회신 일자	결재	
		소속	직급	성명					

[별지 2] (개정안)

성희롱·성폭력·<u>스토킹범죄</u>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									
접수 번호	접수 일자	신청인			고충내용	처리결과	회신 일자	결재	
		소속	직급	성명					